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9월 2일

3. 제안이유

-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·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468명 ⇒ 2,472명(4명 증원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2명 ⇒ 1,416명(4명 증원)
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없음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 관리업무가 관련법령(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,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)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,

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환경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,

승인된 4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